

2019년

지식재산경영인증

목 차

1. 인증 소개
2. 심사항목 설명
3. 심사위원 운영 · 관리
4. 심사시스템 사용

1. 인증 소개

1. 지식재산경영 정의
2. 인증 안내
3. 인증 혜택
4.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
5. 인증 점수기준
6.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

01 인증소개

1) 지식재산경영 정의



기업의 무형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형태

01 인증소개

2) 인증 안내

신청대상

중소기업

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



신청수수료

66만원 → 33만원

한시적 수수료 감면

※인증갱신: 11만원



신청방법

www.ipcert.or.kr

홈페이지 신청



특허청

우선심사대상지정

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

연차등록료 감면

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
4~6년차 70% 감면 

IP스타기업 연차평가

글로벌IP스타기업 연차평가 반영
인증 15점/ 신청 10점

각종 지원사업 가점

글로벌IP스타기업 IP바로지원서비스
IP활용전략지원사업 IP R&D

중기부 및 조달청

중기부

R&D사업 전부문 가점부여
사업화 정책자금
우대지원



조달청

우수조달물품 평가시
기업신인도 부문
가점부여

민간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
TV · 라디오 방송광고 및 제작
70 ~ 50% 할인



SGI 서울보증보험

이행보증한도 증액
이행상품 보험료 할인(10%)
신용관리서비스 무상제공

01 인증소개

4)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

1 인증신청 → 자가진단 실시

인증신청

자가진단

1. 자가진단 2. 자가진단 결과 3. 수수료 결제 4. 방문심사 신청

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위한 문항을 완성하세요.

진단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, 매년 2회의 심사가 가능합니다.
검수와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방문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.
방문 심사를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.

#1 자가진단 실시

2 자가진단결과 → 방문심사신청 및 결제

인증신청

자가진단 결과

1. 자가진단 2. 자가진단 결과 3. 수수료 결제 4. 방문심사 신청

방문심사 신청은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셔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수수료는 110,000원이며,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방문심사는 신청 → 결제완료 → 방문심사 준비중 → 심사완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구분	진단 관리번호	문항	득점	방문신청	관리
인증진단 1차	19	문 / 총	66.95 점	[방문심사 완료]	

#1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 리포트

#2 방문심사 신청

#3 IP 경영인 대화 신청서는 위 [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 리포트]를 PDF로 저장하여, **사무실과 함께 운영기관에 전자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**

#4 PDF 저장

4 인증 승인

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

Certificate of IP Management Enterprise

기업명 : 샐링거(주)
대표자명 : 한승태
인증번호 : 2018-0085
유효기간 : 2018. 4. 25. ~ 2021. 4. 25.

Name of Company : RESET COMPANY CO., LTD.
Representative : JEONG SEONG DAE
Certificate Number : 2018-0084
Valid Period : 2018. 4. 25. ~ 2021. 4. 25.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-mentioned Company is a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「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」 and Article 24-2 of the 「Invention Promotion Act」.

2018년 4월 25일

특허청장

Sung Yunmo
Commissioner,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(심사위원단)



심사항목		배점
항목명	세부내용	
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	▶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,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(최대 8점),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(최대 6점),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7점	10점
직무발명 활성화	▶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: 5점 ▶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(2점)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- 직무발명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	5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	▶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0.8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6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5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2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9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• 단, 특허권 (실용신안권 포함)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	8점

심사항목		배점
항목명	세부내용	
국내의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	▶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1.1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7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4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.2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1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7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◦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	11점
	▶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http://smart.kipa.org) 평가 결과 “AAA” 등급인 건당 1점, “AA”등급은 건당 0.9점, “A”등급은 건당 0.7점, “BBB”등급은 건당 0.5점, “BB”등급은 건당 0.3점, “B”등급은 건당 0.1점 부여(최대 5점)	5점
지식재산권 교육	▶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- 자체 개최 1건당 1.5점,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	5점

심사항목		배점
항목명	세부내용	
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	▶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“(연구개발 인원 수)/(임직원 수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15% 이상인 경우 5점) ▶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: 1인(1점), 2인(3점), 3인 이상(5점)	5점
	▶ “(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10% 이상인 경우 7점)	7점
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	▶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▶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	21점
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	▶ “(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·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30% 이상인 경우 8점)	8점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	▶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하여·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·유지 건수, IP 금융 이용(IP담보 대출, 벤처캐피탈 투자, 기술 신탁 등),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(NEP, 이노비즈 등) 건수 측정(건당 1.6점)	8점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	▶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• 특허공제 가입 시 가점 2점	7점

01 인증소개

5) 인증 점수기준

자가진단

?

72

방문심사

70

100

IP CERT
지식재산경영인증

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 사업

목적

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애로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

대상

지식재산 경영 도입 계획 기업,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(자가진단 실시 기업 또는 인정 신청 후 기준 미충족 기업)

멘토

변리사, 기술사, 지식재산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지식재산경영 전문가

비용

무 료

신청기간

연중 수시 (사업 예산 내)

신청방법

경영인증 홈페이지(www.ipcert.or.kr)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정창호 변리사에게 메일 송부(ipcert@kipa.org)

2. 심사항목 설명

(1) 인증 기준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



정량
10점

-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,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(최대 8점),
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(최대 6점),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7점

지표 설명

-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: 신청일 기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독립된 조직 (본부, 부, 과 등) 보유 여부 평가
- 지식재산권 전담인력 : 신청일 기준 IP출원 · 교육 · 직무발명 · 등록 · 소송 · 계약 · 평가 · 이전 등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, 일부 수행하는 경우 겸임인력으로 산정

증빙

회사조직도, 업무분장표, 인사관련 증빙자료

02 심사항목 설명

직무발명 활성화



정량
5점

☞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: 5점

☞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보유(2점) 및 최근 2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
- 직무발명 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

지표 설명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: 신청일 기준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여부
- 직무발명보상 규정 보유 여부 : 신청일 기준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
- 최근 3년간 보상 건당 점수 부여 : 신청일 기준 실제 보상한 직무발명 건당 점수 측정

증빙

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,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, 이체확인증, 내부기안문 등

02

심사항목 설명
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



정량
8점

☞ **국내 산업재산권** : 특허는 첫 번째 건은 0.8점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6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0.6점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5점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4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☞ **해외 산업재산권** : 특허는 첫 번째 건은 1.2점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1점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8점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7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* 특허권(실용신안포함), 상표권, 디자인권 각각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

지표 설명

- **출원인 범위** :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지식재산권만 인정,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만 인정
- **해외출원** : 동일명칭이라 하더라도 개별국 당 1건으로 인정 (PCT도 1건으로 인정)

증빙

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, 출원사실 증명 신청서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자료)

02

심사항목 설명
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



정량
16점

11점 특허는 첫 번째 건은 1.1점(해외: 1.4점)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9점(해외: 1.2점)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6점(해외: 0.9점)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0.7점(해외: 1점)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6점(해외: 0.8점)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5점(해외: 0.7점)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4점(해외: 0.5점)으로 환산하여 합산

* 특허권(실용신안포함), 상표권, 디자인권 각각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

5점 보유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<http://smart.kipa.org>) 평가 결과 ‘AAA’등급 건당 1점, ‘AA’등급 건당 0.9점, ‘A’ 등급 건당 0.7점, ‘BBB’ 등급 건당 0.5점, ‘BB’등급 건당 0.3점, ‘B’등급 건당 0.1점 부여 (최대 5점)

지표 설명

- **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건수** : 신청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수의 합, 해외특허의 경우 동일명칭이라 하더라도 개별국 당 1건으로 인정
- **특허분석평가시스템** :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조회 후 담당 심사위원 문자로 발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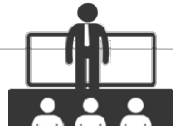
증빙

특허청에서 발급하는 ‘등록원부’ 자료 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자료)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교육

정량
5점

☞ 최근 2년간 자체 개최 1건당 1.5점,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지표 설명

- 최근 2년간 지식재산 관련 교육 개최 여부 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청 기업 주관(변리사 초빙 포함)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 또는 외부 기관 주최 교육 참석 여부 측정

증빙

교육개최 관련 증빙자료(참석자명부 포함), 교육확인서, 수료증 등

02

심사항목 설명

연구개발인력 및 금액



정량
12점

☞ **5점** **15인 이상** : “(연구개발 인원 수)/(임직원 수)” (15% 이상인 경우 5점)

15인 미만 : 연구개발 인력 1인(1점), 2인(3점), 3인 이상(5점)

☞ **7점** “(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2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 (10% 이상인 경우 7점)

지표 설명

○ 연구개발 인원수

- 1) 인증된 기업부설 연구소 or 연구개발 전담부서 존재 :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개발 인원수
(연구전담요원, 연구보조원, 연구관리직원 모두 포함)
- 2) 그 외 : 신청일 당시 실제 연구개발에 전담하고 있는 인원 수

○ **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및 매출총액** :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및 매출총액 합, 설립기간이 짧아
최근1년치 자료만 있는 경우 1년치만 반영, 최근 1년치도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

증빙

- 1)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‘연구개발 인력현황’ 자료
 - 2) 기업내부조직도 및 부서별 소속직원, 직원별 고유업무자료 등
- 그외 : 표준재무제표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동향파악및활용

- ☞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**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**하고 있는 지 평가
- ☞ 최근 2년간 **연구개발 방향설정**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 지 평가

정성
21점

지표 설명

- 선행기술조사,특허맵,특허정보활용 회피설계등 지식재산권동향파악 • 활용을하고있는지평가
- 정부지원사업

구분	총실성		
	IP R&D	특허맵	선행기술조사
지속성 및 활용여부 고려	21점 ↓ 12점	15점 ↓ 9점	12점 ↓ 6점

증빙

최근 2년 이내 IP동향파악자료, IP관련 정부지원사업 증빙자료, 선행기술조사 증빙자료 등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



☞ “(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 / (최근 2년간 매출총액)”
(30% 이상인 경우 8점)

정량
8점

지표 설명

-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및 매출총액 : 보유특허 및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최근 2년간 매출액 및 매출총액 합, 회사 설립기간이 짧아 최근 1년치 자료만 있는 경우 1년 매출액만 반영
 - 최근 1년치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

증빙

제품명, 제품사진, 적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번호, 해당제품 매출액 기재 증빙자료, 표준재무제표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

정량
8점

☞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**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허여 · 유지** 건수 및 **외부 지식재산권 도입 · 유지** 건수, **IP 금융 이용(IP담보 대출, 벤처캐피탈 투자, 기술 신탁 등)**, **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(NEP, 이노비즈 등)** 건수 측정(건당 1.6점)

지표 설명

○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/통상실시/외부지식재산권 허여 · 유지건수

- 실시권 설정상태를 평가
- 현재 실시권 설정이 유효하면 인정
- 단 최근 2년 이내에서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시권 허여한 경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실시권만 인정

증빙

등록원부, 계약서 사본, 인증서(신기술 지정증서/신제품 인증서/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/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/벤처기업확인서) 등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



정성
7점

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 지 평가

* 특허공제 가입시 가점 2점 (최대9점까지 가능)

지표 설명

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이고 충실한 수준으로 수행한 경우 → 7점

반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이고 양호한 수준으로 수행한 경우 → 6점

매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→ 5점

1~2회 실시한 경우 → 3~4점

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→ 1점

증빙

분쟁사전모니터링 실시결과, 국제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 증빙자료, 심판 및 소송 증빙자료 등

(2) 인증갱신 기준

02 심사항목 설명

직무발명 활성화



정량
5점

- ☞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: 5점 (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)
- ☞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보유(2점)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
 - 직무발명 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

지표 설명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: 신청일 기준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여부
- 직무발명보상 규정 보유 여부 : 신청일 기준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여부
- 최근 3년간 보상 건당 점수 부여 : 신청일 기준 실제 보상한 직무발명 건당 점수 측정

증빙

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,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, 이체확인증, 내부기안문 등

02

심사항목 설명
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



정량
10점

☞ **국내 산업재산권** : 특허는 첫 번째 건은 0.8점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6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0.6점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5점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4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☞ **해외 산업재산권** : 특허는 첫 번째 건은 1.2점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1점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8점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7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* 특허권(실용신안포함), 상표권, 디자인권 각각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

지표 설명

- **출원인 범위** :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지식재산권만 인정,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만 인정
- **해외출원** : 동일명칭이라 하더라도 개별국 당 1건으로 인정 (PCT도 1건으로 인정)

증빙

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, 출원사실 증명 신청서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자료)

02

심사항목 설명
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



정량
18점

13점 특허는 첫 번째 건은 1.1점(해외: 1.4점),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건은 0.9점(해외: 1.2점), 다섯 번째 건부터는 0.6점(해외: 0.9점)으로 환산하여 합산, 실용신안·상표권·디자인권은 각각 첫 번째 건은 0.7점(해외: 1점),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건은 0.6점(해외: 0.8점),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건은 0.5점(해외: 0.7점), 일곱 번째 건부터는 0.4점(해외: 0.5점)으로 환산하여 합산

* 특허권(실용신안포함), 상표권, 디자인권 각각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5점 보유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<http://smart.kipa.org>) 평가 결과 ‘AAA’등급 건당 1점, ‘AA’등급 건당 0.9점, ‘A’ 등급 건당 0.7점, ‘BBB’ 등급 건당 0.5점, ‘BB’등급 건당 0.3점, ‘B’등급 건당 0.1점 부여 (최대 5점)

지표 설명

- **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건수** : 신청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수의 합, 해외특허의 경우 동일명칭이라 하더라도 개별국 당 1건으로 인정
- **특허분석평가시스템** :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조회 후 담당 심사위원 문자로 발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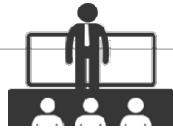
증빙

특허청에서 발급하는 ‘등록원부’ 자료 (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자료)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교육

정량
5점

☞ 최근 3년간 자체 개최 1건당 1.5점,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

지표 설명

-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관련 교육 개최 여부 :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청 기업 주관(변리사 초빙 포함)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 또는 외부 기관 주최 교육 참석 여부 측정

증빙

교육개최 관련 증빙자료(참석자명부 포함), 교육확인서, 수료증 등

02 심사항목 설명

연구개발 금액



정량
7점



7점

“(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3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 (10% 이상인 경우 7점)

지표 설명

-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및 매출총액 :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및 매출총액 합

증빙

표준재무제표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동향파악및활용

- ☞ 최근 3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**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**하고 있는 지 평가
- ☞ 최근 3년간 **연구개발 방향설정**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 지 평가

정성
21점

지표 설명

- 선행기술조사,특허맵,특허정보활용 회피설계등 지식재산권동향파악 • 활용을하고있는지평가
- 정부지원사업

구분	총실성		
	IP R&D	특허맵	선행기술조사
지속성 및 활용여부 고려	21점 ↓ 12점	15점 ↓ 9점	12점 ↓ 6점

증빙

최근 3년 이내 IP동향파악자료, IP관련 정부지원사업 증빙자료, 선행기술조사 증빙자료 등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



☞ “(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 / (최근3년간 매출총액)”
(30% 이상인 경우 8점)

정량
8점

지표 설명

- 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 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및 매출총액 : 보유특허 및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매출총액 합

증빙

제품명, 제품사진, 적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번호, 해당제품 매출액 기재 증빙자료, 표준재무제표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

정량
8점

☞ 최근 3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**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허여 · 유지** 건수 및 **외부 지식재산권 도입 · 유지** 건수, **IP 금융 이용(IP담보 대출, 벤처캐피탈 투자, 기술 신탁 등)**, **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(NEP, 이노비즈 등)** 건수 측정(건당 1.6점)

지표 설명

○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/통상실시/외부지식재산권 허여 · 유지건수

- 실시권 설정상태를 평가
- 현재 실시권 설정이 유효하면 인정
- 단 최근 3년 이내에서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시권 허여한 경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실시권만 인정

증빙

등록원부, 계약서 사본, 인증서(신기술 지정증서/신제품 인증서/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/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/벤처기업확인서) 등

02 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



정성
7점

최근 3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 지 평가

지표 설명

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이고 충실한 수준으로 수행한 경우 → 7점

반기별 1회 이상 지속적이고 양호한 수준으로 수행한 경우 → 6점

매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→ 5점

1~2회 실시한 경우 → 3~4점

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→ 1점

증빙

분쟁사전모니터링 실시결과, 국제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 증빙자료, 심판 및 소송 증빙자료 등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경영 이용

정량
3점

☞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제도의 인증 혜택을 이용하여 기업 경영을 개선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

지표 설명

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이용 시 → 1점

특허청 관련 혜택(우선심사 선정, 각종 사업 가점 취득 등) 이용 시 → 건당 0.5점

타부처 사업 혜택(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등) 이용 시 → 건당 1점

증빙

연차등록료 납부 내역, 우선심사결정서, 사업관련 자료 등

02

심사항목 설명

지식재산경영 효과



정량
8점

☞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제도를 통해 달성한 기업 성장을 측정

- * 고용창출의 경우, 해당항목이 만점인 경우에도 최대 4점까지 가점으로 등록
- * 단, 해당 분야에서 성장이 없는 경우 (성장률 0% 미만) , 해당분야 0점 처리

지표 설명

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50% 이상인 경우 → 8점 부여
 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40%~50% 미만인 경우 → 6점 부여
 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30%~40% 미만인 경우 → 4점 부여
 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20%~30% 미만인 경우 → 2점 부여
 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10%~20% 미만인 경우 → 1점 부여
 최근 3년간 매출 증대가 0%~10% 미만인 경우 → 0점 부여

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20% 이상인 경우 → 8점 부여
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15%~20% 미만인 경우 → 6점 부여
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10%~15% 미만인 경우 → 4점 부여
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5%~10% 미만인 경우 → 2점 부여
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0% 초과~5% 미만인 경우 → 1점 부여
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이 0%인 경우 → 0점 부여

증빙

국세청에서 발급된 최근 3년치 표준재무제표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감사합니다

